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달시 감축계획 제출 의무
부과 등 〉

■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20호)

2025. 9.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달시 감축계획 제출 의무 부과 등	3
2. 국가 및 시·도 기본계획을 국회·지방의회에 사전 보고 등	7
3. 부칙	11

I. 제안경위

2025년 2월 25일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해 그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 감축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점검 결과에 따른 부진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의 보완책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하는 기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국회에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음.

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 감축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현황 점검 결과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국회와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사후가 아닌 사전 보고로 변경함으로써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과정에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78조).

Ⅲ. 검토의견

1.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달시 감축계획 제출 의무 부과 등

개정안은 ①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부문의 주무부처가 결과보고서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축계획을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라 한다)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② 관계기관이 점검 결과에 따른 부진·개선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탄녹위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③ 감축계획의 제출 또는 개선사항의 반영 의무 등 위반 시 탄녹위가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u>온실가스 감축 계획</u> 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결과 보고</u> <u>서를 공개한 날부터 30일 이내</u> <u>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u>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방법 및 결과 보고서의 공개 절차,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u>제출 방법</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④ ----- ----- ----- ----- ----- -----하며,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⑥ ----- ----- ----- -----제출 방법, 제4항에 따른 미반영 이유 통지, 제5항에 따른 공표 등에----- ----- -----.
--	---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

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9조¹⁾에 따라 탄녹위는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 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부진·개선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점검 결과에 따른 부진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아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고, 감축계획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연도별 감축목표 미달 시 30일 이내에 감축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감축 책임을 명확히 하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유도하며, 이행점검 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를 탄녹위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지적사항의 이행을 촉진하는 등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행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감축계획 수립에는 분석 및 부처 간 조율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정안과 같이 30일 이내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경우 오히려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거나 기한 준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 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그 개선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방법 및 결과 보고서의 공개 절차,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국가 및 시·도 기본계획을 국회·지방의회에 사전 보고 등

개정안은 ① 국가기본계획 또는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② 국가 및 시·도 기본계획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국회 및 지방의회가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8조(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u>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u>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국회 보고 등) ① -----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을 <u>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u>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 ----- -----.

③ (생략) <u><신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회 보고 및 지방의회 보고의 시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u>국회와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u> ⑤ -----제4항까지의----- ----- -----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78조제1항2)에 따라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이하 “시도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8조(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회 보고 및 지방의회 보고의 시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기본계획 또는 시도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기본계획 등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및 지방의회 차원의 시정 및 개선권고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시도계획 등 수립·변경 시 사전에 국회 및 지방의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정책 수립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대표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회가 기본계획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제고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및 부문별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은 국가 기본계획은 관계부처의 정책, 시도계획 등은 관할 지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해야 하나, 사전 보고로 변경 시 협의·조정 등이 완료되지 않은 기본방향만 보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³⁾,

입법·행정의 분리 등의 측면에서 행정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사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법에 국회의 시정 및 개선 권고 권한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다른 유사 입법례⁴⁾를 고려할 필요가 있

3) 안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대상 및 내용이 대략적인 계획인지 완비된 계획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환경부는 이를 기본방향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⑦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

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회의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북한인권법」 제6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수립) ④ 위원회는 수립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통계법」 제5조의4(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⑤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2(국회 보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기본법」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⑥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항만법」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부칙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부칙안).

[개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 개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임.

다만, 개정안 제9조제3항과 관련하여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가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미 공개된 경우 관계기관이 점검 결과에 따른 부진·개선 사항의 정책 미반영 시 공표 여부 등에 있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결과 보고서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33